

# 학 생 선 도 규 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교규칙에 의거 학생의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선도원칙)

- ① 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② 징계는 평소 개인의 품행을 참작하고,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를 위주로 처리하도록 한다.

## 제2장 선도위원회

### 제3조 (구성)

- ① 본 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음악부장, 생활지도부장, 해당 학생 담임교사와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 ②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③ 생활지도부 교사는 간사가 되어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제4조 (기능)

선도 대상 학생의 징계 범위에 관한 심의를 한다.

### 제5조 (심의)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제6조 (진술)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담임교사, 관계교사 및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제7조 (재심의 부의)

- ①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및 학부모는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기록)

교내 생활지도부 교사는 위원이 아닌 상태로 참석하여 회의록을 기록하고 결재를 받는다.

## 제3장 징계

### 제9조 (징계의 종류)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에 규정한 바에 따라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훈계 및 벌점
  - (2) 교내봉사 : 5일 이내의 기간 (1일 4시간 기준)
  - (3)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 (1일 8시간 기준)
  - (4) 특별교육이수 : 5일 이내의 기간
  - (5) 정학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가정학습
  - (6) 퇴학처분
- ② 징계기간은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 제10조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훈계 : 훈계는 학생이 경미한 교칙을 위반하였을 때 상·벌점 기록을 남긴 후 지도교사가 지도한다.
- ② 교내봉사 : 교내봉사는 징계 기간 동안 생활지도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교는 교내 봉사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고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선도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사회봉사
  - (1)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며, 학교는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교육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사회봉사 기간에 대하여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케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공공기관 청소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관, 고아원 등)
  - (2) 사회봉사기간동안 학생은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특별교육이수

(1)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단, 교육 기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사회봉사기간동안 학생은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정학 : 출석정지 및 가정학습

(1) 정학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실시한다.

(2)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⑥ 퇴학처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교육상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 이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며, 불이행시에는 '퇴학처분'을 명함과 동시에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해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제11조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징 계 기 준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내 용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예· 교권 침해	1	언행이 불량하여 외부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학생	○	○	○			
	2	교사(학부모 교사, 특강 강사 등)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순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
	3	교권을 침해한 학생, 교사에게 불순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	○
	4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5	학교의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6	타인을 선동하여 교권 훼손을 주도한 학생 및 가담한 학생	○	○	○	○	○	○
근태	7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한 학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무단결석 1회로 간주)	○	○	○	○	○	○
	8	무단가출한 학생	○	○	○			
	9	용의 및 복장 관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	○	○	○	○	○
관 법	10	상습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생	○	○	○	○	○	○
	11	공공 문서 및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	○	○
	12	상습적으로 교내외의 방법으로 학교 출입을 한 학생	○	○	○			
	13	학교장의 허가 없이 외부행사에 출연 또는 참가한 학생	○	○	○			
	14	학교 게시물 및 시설물 등을 고의로 훼손·파손한 학생	○	○	○			
	15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16	타인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	○	○	○	○
	17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했거나 이에 가입한 학생	○	○	○	○	○	○
	18	학교 질서를 문란 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동조한 학생	○	○	○	○	○	○
	19	학교장의 허가 없이 행사를 주관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
	20	타인의 물품 혹은 금품을 절취(절도)한 학생	○	○	○	○	○	○
	21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정수한 학생	○	○	○	○	○	○
	22	불량 동아리를 조직, 운영하였거나 활동한 학생	○	○	○	○	○	○
	23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한 학생	○	○	○	○	○	○
	24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
	2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	○
	26	사법기관에 구속·석방된 학생	○	○	○	○	○	○
2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정보 통신	28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29	불량 동아리 카페를 조직, 운영 또는 건전하지 못한 활동으로 학교 명예를 크게 실추한 학생			○	○	○	○
	30	음란·폭력성 유해사이트 접속이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소지, 사용, 배포, 매매한 학생	○	○	○	○		
수업	31	교사의 교육권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	○	○	○	○	○	○
	32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33	학급단위 활동이나 학교단위 활동에 무단 불참한 학생	○	○	○	○		
	34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휴대폰을 소지한 학생	○					
	35	교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 동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또는 시험과 관련한 물품을 소지한 학생	○	○	○	○	○	○
	36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	○
연습 및 합주실 사용	37	악기, 책걸상 등 교실 내 가구를 허가 없이 이동·반출한 학생	○	○	○			
	38	악기 장비를 허락 없이 사용한 학생	○	○	○			
	39	악기 및 음향장비를 고의로 훼손·파손한 학생	○	○	○			
	40	연습실 및 합주실 사용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학생	○	○	○			
기타	41	연습실 및 합주실 관리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순한 반항을 한 학생	○	○	○	○	○	○
	42	이외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악물 및 출연	43	청소년 유해 악물을 소지 또는 사용, 유통한 학생	○	○	○	○	○	○
	44	출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1회 시 교내봉사(5일 이내), 2회 시 사회봉사(5일 이내), 3회 시 특별교육이수(5일 이내), 4회 시 정학(1회 10일 이내의 가정학습), 5회 시 징계위원회 회부 및 퇴학처분	○	○	○	○	○	○
안전 및 폭력 예방	45	휴대 금지 물품(총기 등)을 소지한 학생	○	○	○	○	○	○
	46	허가 없이 하급생을 집합시킨 학생	○	○	○	○	○	○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약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규정에 의하여 심의한다.	피해학생조치		가해학생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						

**제12조** (징계 심의 확정)

- ①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교내 생활지도부 교사의 진상조사(징계 경위서, 사안발생보고서)와 담임 교사의 의견(구술 또는 의견서)을 근거로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 ②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부장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후 확정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내용의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14조** (징계 학생 고사 응시)

학교장은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에 응한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징계 기간의 단축)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징계위원회의 재심을 통하여 징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 담임교사의 소견서를 징계 해제 전에 생활지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후 지도)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결과를 기록한다.
- ②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교를 대표하는 행사<sup>1)</sup>에 중요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제4장 규정의 제·개정**

**제18조** (규정의 제·개정)

규정의 제·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기타 규정)

1) 학교를 대표하는 행사란 본교 학생이 참가하는 교내외의 행사 중에서 음악부 및 관련 부서의 교사들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학교를 대표한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말함.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선도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

성별	남 학생	여 학생
교복	1. 바지의 목을 줄여 입지 않는다. 2.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교내에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그 이외의 요일에 대해서는 교내에서 지정된 생활복을 허용한다.	1. 치마 길이는 무릎 선으로 한다. 2. 치마가 몸에 달라붙도록 줄여 입지 않는다. 3.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교내에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그 이외의 요일에 대해서는 교내에서 지정된 생활복을 허용한다.
신발 (양말)	1. 학생용 운동화를 착용한다. (조리, 슬리퍼 등은 착용금지)	1. 학생용 운동화 및 단화를 착용한다. (조리, 슬리퍼, 하이힐 등은 착용금지) 2. 성인용 스타킹은 착용하지 않는다.
학생증	1. 연습실 사용 확인 및 신분 증명을 위하여 학생증을 항상 소지한다.	1. 연습실 사용 확인 및 신분 증명을 위하여 학생증을 항상 소지한다.
기타	1. 귀걸이, 반지, 팔찌, 목걸이, 피어싱 등의 액세서리는 착용을 금지한다. 2. 핸드폰은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며 학교 수업 중에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압수하고 일정 기간 후 돌려주도록 한다. (단, 담당교사로부터 수업 중 필요하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납한다.) 3. 담배, 라이터 등 청소년 및 학생에게 허용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학생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다. 4. 문신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1. 귀걸이, 반지, 팔찌, 목걸이, 피어싱 등의 액세서리는 착용을 금지한다. 2. 핸드폰은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며 학교 수업 중에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압수하고 일정 기간 후 돌려주도록 한다. (단, 담당교사로부터 수업 중 필요하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납한다.) 3. 담배, 라이터 등 청소년 및 학생에게 허용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학생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다. 4. 문신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5. 화장 및 손톱을 기르거나 매니큐어 사용을 금지하며 화장품 소지하지 않는다.

### 제1조 (두발)

- ① 학생의 염색, 파마, 불량스러운 두발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기획사 소속 학생의 허락된 행사, 교내의 특별한 행사 및 외부행사 참여를 앞둔 학생은 정식 공문을 통해 학교장의 허락 하에 제외함.)
- ② 남·여학생 모두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머리를 기르거나 모자를 착용할 경우엔 본교 소정 양식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머리훈터 및 수술
  - (2) 대외적인 문예활동
  - (3) 기타 정당한 사유
- ③ 학생 두발규정은 교사의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지도와 지속적인 학생회 자치활동을 통해

여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조 (복장)

- ① 학교에서 정한 교복 및 생활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금요일 : 교복착용 / 이외 요일 : 생활복 허용)
- ② 신발 : 운동화, 단화류의 학생화를 착용하며, 굽이 높은 신발, 조리, 슬리퍼의 착용을 금한다.
- ③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피어싱 등 액세서리의 착용을 금하며, 문신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 제3조 (기타) 기타 학교생활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① 화장 및 손/발톱의 매니큐어를 금하며 성인용 화장품을 소지할 수 없다.
- ② 핸드폰은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며 학교 수업 중에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압수하고 일정 기간 후 돌려주도록 한다. (단, 담당교사로부터 수업 중 필요하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납한다.)
- ③ 담배, 라이터 등 청소년 및 학생에게 허용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학생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다.
- ④ 위의 사항 이외에도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저해되는 사항을 규제할 수 있다.

### ※ 교내 생활 수칙 ※

- ①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② 쉬는 시간 등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학교 외부로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 ③ 위험한 놀이는 자제합니다.
- ④ 계단 통행 시에는 서로 양보합시다.
- ⑤ 계단에서는 여러 계단을 한꺼번에 뛰거나, 난간에서 장난하지 맙시다.
- ⑥ 창가에서 장난치지 말고 창틀에 걸터앉거나 매달리지 맙시다.
- ⑦ 교실 문이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 장난을 삼갑시다.
- ⑧ 교탁, 출입문, 연습실 벽, 기둥 등을 발로 차지 맙시다.
- ⑨ 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복으로 갈아입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합니다. 운동 중에 심한 두통, 어지럼증, 가슴 결림, 호흡곤란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무실로 방문합니다.
- ⑩ 교내에 공사 또는 수리 중인 시설이나 위험한 곳은 출입을 삼갑시다.

※ 교내 음악생활 수칙 ※

- ① 수업시간 전에 교실을 정리하고 악기를 세팅합니다.
- ② 개인악기, 케이블, 건반 페달은 개인이 준비합니다.
- ③ 악기, 책걸상 등 교실 내 기물은 허가 없이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하며 관리부 선생님 허락 하에 이동합니다.
- ④ 악기, 음향장비 파손에 주의합니다.
- ⑤ 합주실 및 연습실 사용주의 사항을 따릅니다.
- ⑥ 연습실 출입 시 학생증을 항상 소지합니다.
- ⑦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을 하며, 악기와 장비, 연습실을 깨끗이 사용합니다.
- ⑧ 소지품에 개인 이름과 반 번호를 기입하여 분실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 ⑨ 빈 공간에 남겨진 개인 소지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임을 기억합니다.
- ⑩ 개인연습실에 2명 이상의 학생이 들어가는 것을 금하며, 불경건한 행동을 금지합니다.
- ⑪ 연습실 내에 조명을 끄지 않도록 하며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 ⑫ 생활 수칙을 어기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학생선도규정에 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기기(휴대전화 및 mp3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목적)

- ①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을 스스로 절제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한다.
- ②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③ 기기(器機)의 올바른 사용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 ④ 자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에 주력한다.
- ⑤ 휴대전화 예절 교육을 통하여 정보통신사회에서 건전하고도 예절바른 학생을 육성한다.

제2조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방침)

- ① 수업 중 휴대폰을 휴대하지 않도록 한다. 단, 담당교사로부터 수업 중 필요하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납한다.

제3조 (규정 위반 시 조치)

- ① 1차 적발 시 벌점을 받은 후 1일 후에 적발한 담당선생님께 찾아간다.
- ② 2차 적발 시 벌점을 받은 후 3일 후에 적발한 담당선생님께 찾아간다.
- ③ 만약 위의 물품들을 소지 및 사용 중 물품이 분실될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별지 :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조치에 관한 징계 기준표>

구분	항	행위내용	징계					
			서면사과	전폭·협박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상담	출석정지
인·배임·악행	1	공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을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경우	○	○	○	○	○	○
	2	공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을 상습적, 집단적으로 한 경우	○	○	○	○	○	○
	3	공갈, 협박, 강요 등을 행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	○	○	○	○	○
	4	상습적이거나 집단적으로 협박, 강요 등을 행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	○	○	○	○	○
	5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행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경우	○	○	○	○	○	○
	6	상습적으로 따돌림을 행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경우	○	○	○	○	○	○
상·영·폭·행	7	2주 이내의 상해를 입힌 경우	○	○	○	○	○	○
	8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	○	○	○	○
	9	다른 학생을 폭행한 경우	○	○	○	○	○	○
	10	다른 학생을 의도적, 계획적으로 폭행한 경우	○	○	○	○	○	○
	11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	○	○	○	○	○
	12	집단적으로 폭행한 경우 (집단싸움 포함)	○	○	○	○	○	○
성·폭·행·악·행	13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명예훼손, 모욕 등을 행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경우	○	○	○	○	○	○
	14	상습적으로 성적인 명예훼손, 모욕 등 수치심을 준 경우	○	○	○	○	○	○
	15	집단적으로 성적인 명예훼손, 모욕 등 수치심을 준 경우	○	○	○	○	○	○
	16	성폭행을 한 경우	○	○	○	○	○	○
	17	상습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한 경우	○	○	○	○	○	○
사이버·폭·행·악·행·정·보	18	사이버 상에서 남을 협박,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	○	○	○	○	○
	19	상습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남을 협박,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	○	○	○
	20	사이버 상에서 금품을 빼앗거나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 해킹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	○	○	○	○	○
	21	상습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금품을 빼앗거나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 해킹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	○	○	○	○	○
	22	음란물과 관련된 영상물 등을 사이버 상에 올리거나 유포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	○	○	○	○	○
	23	상습적으로 음란물과 관련된 영상물 등을 사이버 상에 올리거나 유포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	○	○	○	○	○
기타	1	징계를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동일 징계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2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3	징계를 받고도 개선의 정이 없을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여러 개의 징계조치를 병과 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법률 제7119호, 2004.1.29)'과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8497호, 2004.7.30)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③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제2조 제1항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생의 비행에 대한 사안은 학생선도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학교폭력예방교육)**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내용에 따라 위의 제1항과 동시에 교육이 가능함)
- ③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피해학생의 보호)**

- ① 심리상담 및 조언
- ② 일시 보호 (학교장 인정 시 출석 처리 가능)
- ③ 치료를 위한 요양
- ④ 학급 교체

**제6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③ 학교에서의 봉사
- ④ 사회 봉사
-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